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황숙희, 전수곤, 김영래
배재만, 구교강, 김성우, 도희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사무과장,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7. ~ 12. 21.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성주군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

성주군의회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인사관리”를 “인사・복무・교육・복리후생”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①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과장) ① (생 략)	제2조(사무과장) ① (현행과 같음)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3. ---------- 인사·복무·교육·복리후생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제3조(전문위원) ① (생 략)	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정책지원관) ①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책지원관 관련 행정안전부 조례 참고안

제○조(정책지원관) ① [사무처(국·과)/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국·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